

여신거래기본약관, 여신거래약정서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】

기 존(변경 전)	정 정(변경 후)
<p>제3조(이자등과 지연배상금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</p> <p>⑨ ----- ----- -----,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⑩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.</p> <p>제8조(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</p>	<p>제3조(이자등과 지연배상금) ① ~ ⑦ (기존과 같음)</p> <p>⑧ 제4항 및 제5항, 제7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⑨ ----- ----- -----, 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⑩ 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8조(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) ① ~ ② (기존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</p>

기 존(변경 전)	정 정(변경 후)
<p>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-- 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④·⑤ (기존과 같음)</p>

【여신거래약정서】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조 (거래조건)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<신 설></p> <p>제2조(지연배상금) ①~② (생략) 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조 (거래조건)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</p> <p>제2조(지연배상금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,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,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